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선험론적인 - 조지프 히스

번역자: 서요련

서지정보

Joseph Heath(2011), “Justice: Transcendental not Metaphysical”, eds. James Gordon Finlayson & Fabian Freyenhagen(2011), *Habermas and Rawls: Disputing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pp. 117-134.

117

위르겐 하버마스과 존 롤스의 논쟁에서 특히나 불만스러운 점 한 가지는 두 사상가가 벌인 철학적 **개입**의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롤스가 하버마스의 이론 기획 전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 놀랍다. 여기에는 삶의 궤적과 관련된(biographical)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대한 철학적 이유도 있다. 롤스는 응답 첫 부분에서 하버마스의 철학적 기획을 포괄적 신념체계로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자기 이론의 경쟁 이론 혹은 똑같은 개념적 공간에 있는 구성물로 간주하지 않았다. 대신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그야말로 또 다른 풍취의 칸트주의로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보여주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 중 첫째는 하버마스의 입장이 포괄적인 반면 나의 입장은 정치적인 것을 해명하고 그 과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¹⁾ 그리하여 롤스는 하버마스의 철학적 기획을 여타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에 그렸던 것 이상으로 세밀하게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버마스 쪽도 이러한 분류를 단호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입장이 포괄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대신 정의론이 롤스의 뜻대로 “정치적”일 필요성에 도전하는 길을 택한다.²⁾ 정확히 말해 하버마스는 정치적 정의관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더욱 협소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버마스는 정의론이 경쟁하는 선관들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반환전주의적 제약을 존중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주의가 “대립적이고 화해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체계”³⁾ 사이에서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118) 그러나 이 논의의 상당 부분은 “합당성”과 “진리”의 관계를 둘러싼 상대적으로 무익한 논쟁이라는 결말로 새고 말았다.

118

이로써 정의론의 구성 기획이 진리나 정당화에 관한 올바른 설명 따위의 철학적 논쟁에 불모로 잡히지 않도록 극도로 유의해야 한다는 롤스의 핵심 논점을 의도치 않게 지지하는 형국이 되었다.⁴⁾

1) RH, p. 132.

2) 이러한 논증 경로는 토머스 매카시(Thomas McCarthy)가 가장 강력한 형태로 정식화하였다. 매카시의 “Kantian Constructivism and Reconstructivism: Rawls and Habermas in Dialogue”, *Ethics*, CV: pp. 44-63, 51-53.

3) PL, p. 4.

4)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하버마스의 본질적으로 이유 없는 고집이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동기화된 동의는 모든 당사자들이 그저 같은 제안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지지 이유에 근거하여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련된 논의로 Joseph Heath(2001), *Communicative Action and Rational*

그런데 하버마스의 입장을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논점이 그토록 명백한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하버마스의 입장 중에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경쟁하는 요소, 즉 “민주주의 원리” 및 하버마스가 그로부터 도출하는 권리의 체계는 자립적 정식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논점이 그토록 명백한가? 이 물음이 바로 내가 이 장에서 탐구하려는 물음이다. 하버마스가 정의의 “정치적” 구상이 보여주어야 하는 특징에 관한 롤스의 설명을 공격하는 대신 단순히 자신의 이론도 롤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임을 주장했다고 가정해보자. 롤스는 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단지 자립적 정의관으로 채택될 후보에 불과하다고 했지,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게 채택될 유일한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만약 하버마스가 자신의 입장을 그 외의 후보로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나의 이른바 논증대화윤리 이론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론적 개입의 결과로 이 정의관을 지지하게 되었으나,”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고 당신이 고유의 이유로 나의 정의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는 나의 정의관이 부분적으로 일련의 선행론적⁵⁾ 주장에 근거한다고 보며, 이는 당신의 포괄적 신념체계가 그 주장을 이미 전제해야만 함을 뜻한다. 덕분에 이 주장은 중첩적 합의에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다.”

1. 예비적 고찰

논증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태를 명확히 하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우선 롤스가 특정한 정의관이 “자립적”일 조건을 아주 엄밀하게 진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겠다.⁶⁾ (119) 게다가 롤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적 모험으로서의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시민”, “질서정연한 사회”⁷⁾ 등 스스로 자립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많은 개념을 사용하지만, 왜 이들 개념을 자립적이라고 부를 만한가 혹은 어떻게 이들 개념이 특정한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와 갈등하는 지지 사항(commitments)과 결부되어 있다고 불평하는 비평가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선택을 방어할 수 있는가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⁸⁾

119

더불어 이 모든 개념이 특정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한 포괄적 신념체계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출현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개인을 “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많은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침전물(baggage)을 동반하는 발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포괄적 의미에서 거부할 법한 침전물이 아닐 뿐이다. (롤스가 흔히 알려진 자립적 개념으로 “시민” 대신 “동무”를 선택했다면 반응이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해보라.) 따라서 롤스의 개념은 특정한 포괄적 신념체계에서 발생했음에도 거기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며, 다른 사적

Choice, Cambridge, MA: MIT Press, pp. 251-253; McCarthy, “Kantian Constructivism”, p. 57.

5) 역주: 본 번역에서는 독일어 *transzendental*의 영어 번역어인 *transcendental*의 한국어 번역어로 ‘선행론적’을 채택한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 능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는 논의’를 뜻한다. 한편 칼-오토 아펠의 이론인 *transcendental pragmatics*는 ‘선행화용론’이라 번역하는 관행이 있고, 단어 자체에 ‘론’(論)을 포함하고 있어 ‘선행론적 화용론’ 대신 ‘선행화용론’이라 써도 무방할 듯하다.

6)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롤스는 다른 곳에서 다르게 말했는데 특히 한 입장이 포괄적이 되는 조건에 관해 그랬다(PL, 12-13). 이와 관련한 논의로 Samuel Scheffler(2003), “The Appeal of Political Liberalism”, ed. Chandran Kukathas, *John Rawls, Vol. 4: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Law of Peoples*, London: Routledge, pp. 10-14.

7) RH, p. 141.

8) 롤스는 그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롤스가 말하는 바는 그저 이러한 정의관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도록 하는 것과 연합된 가치가 매우 커다란 가치이며, 따라서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와 연합된 가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PL, 139).

인 포괄적 신념체계의 지지자들도 채택하기에 적합하도록 “자립적 정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약정적 재정의(stipulative redefinition)를 수반하는가이다.

용어를 엄밀히 할 목적으로 자립적 정식이 될 여지가 있는 개념과 종속적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전자는 자신의 포괄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을 가리키는 데 반해, 후자는 어떤 포괄적 신념체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논쟁적 특성과 어떻게든 불가분하게 결합해 있어서 그럴듯하게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을 뜻한다.⁹⁾ 많은 경우 이는 그 용어의 함축이 너무나도 깊이 확립되어 있기에 (기술 용어로 약정적 재정의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구별은 임시변통에 불과하지만 분명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영혼”(soul)과 “인간”(person)이라는 단어는 종종 교환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합당하게 종속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인간”은 자립적 정식을 취할 여지가 있다. 가령 로널드 드워킨이 미국에서 낙태의 합헌성을 주제로 제시한 논증을 보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드워킨이 다양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자립적 인간 개념과 구별할 목적으로 “헌법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도 말이다.¹⁰⁾

120

이러한 맥락에서 재차 언급할 만한 사항은, “중립성”(neutrality)이 자유주의적 정의론 구성의 중대한 제약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널리 퍼진 입장에 롤스가 강한 추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스스로는 이 용어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¹¹⁾ 부분적 이유는 롤스가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정의론』 시기의 입장과 너무 긴밀하게 묶여 있다고 본 데 있다. 『정의론』 시기의 입장에 따르면 상이한 “좋은”의 관념들에 관해 중립적인 방식으로, “옳음”의 관점에서 원칙을 정식화하면 자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¹²⁾ 드워킨은 “자유주의”와 이러한 의미의 중립성을 연결하는 표준적 방법을 제시한다.¹³⁾ 롤스의 자립성 개념(concept of the freestanding)은 포괄적 도덕이론이 의무론적 정식을 취하든 결과주의적-완전주의적 정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그 이론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립성보다 강한 개념이다. 이 점은 롤스가 칸트주의와 함께 실제로 자신이 과거에 지지한 어떤 사항조차도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의 일부로 분류한다는 데서 명백하다. 자립적 정의관의 집합은 드워킨 식 중립적 정의관의 부분집합으로 봄이 가장 그럴 법할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버마스는 자신의 저작, 특히 **도덕철학** 저작에서 드워킨 식 중립성이 특정한 원칙이 수렴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¹⁴⁾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는 자기 입장의 자립성 여부를 우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자립적 방식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버마스 입장의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롤스는 처음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포괄적 이론의 일부로, 곧 『정의론』에서 체계화된 신념체계의 규정하면서, 제3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율성 관념과 함께 “정의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 그것도 가장 중요

9) 로버트 브랜덤은 이에 관하여 유용한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Robert Brandom(1994), *Making It Explic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126을 보라.

10) Ronald Dworkin(1996), *Freedom's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46.

11) PL, p. 191.

12) PL, p. 192.

13) Ronald Dworkin(1985), “Liberalism”, *A Matter of Princip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192.

14) 이러한 수렴에 관하여 Crispin Wright(1992), *Truth and Objectiv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eath, *Communicative Action and Rational Choice*, pp. 236-262도 보라.

한 일부”¹⁵⁾라고 주장한다.¹⁶⁾ 특정한 정의관이 최초로 이러한 유형의 광범위한 이론의 맥락에서 규정되었다고 해서 그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는 종속적 정의관이라고 추론하면 일종의 계보학적 오류[발생론적 오류](genealogical fallacy)를 범하는 셈이다. 실제로 롤스는 그러한 이론을 본래 규정된 맥락에서 분리할 원칙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이론에 수행한 바이기 때문이다. 즉 롤스는 스스로 인정했던 입장을 일종의 포괄적 칸트주의로 취급하며, 자신의 이론이 공리주의자조차도 수용 가능한 중첩적 합의의 후보로 고려될 수 있음을 논증하면서 그 정박지(moorings)와 단절시킨 것이다. (121) 롤스가 이를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전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은데, 이는 왜 원초적 입장이 자립적 정식의 훌륭한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21

일부 문제는 롤스가 정의관이 자립적이기 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롤스가 어떤 암시를 주고는 있다.

무엇보다도 롤스는 자립적 정의관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괄적 신념체계의 지지자들이 취하는 입장 간의 한낱 교집합, 최소공통분모 혹은 중개된 타협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경우 정의관은 “그릇된 방식으로 정치적”¹⁷⁾이 되고 만다. 이 점은 정치적 정의관이 “응용 도덕철학”(applied moral philosophy), 말하자면 한낱 “이미 정교화된 독립적인 종교적, 철학적, 혹은 도덕적 신념체계를” 정치적 문제에 “적용한”¹⁸⁾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롤스의 입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정의관은 “여타 관계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관계의 어떤 특수한 성질로 인해 나오는데”¹⁹⁾ 일련의 원칙들을 포괄해야 한다. 롤스가 말하는 “특수한 성질”이란 정치 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점이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과 정치권력이 강제적으로 행사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므로 롤스가 자립적 입장을 정식화할 목적으로 선호하는 접근은 모든 포괄적 신념체계를 도외시하고 정치 영역의 특수한 제도적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맥락에 알맞게 재단된 일련의 원칙을 정식화하는 이론가들을 위한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여러 포괄적인 도덕적 견해들의 교차점이 아니다. 실상 그 결과는 포괄적인 도덕적 견해 일부 또는 전부와 갈등할 수도 있다. 특정한 정치적 가치가 개인들이 신봉하는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에 뿌리를 둔 다른 가치와 갈등하더라도 중첩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정치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능가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 이유는 각 개인 고유의 포괄적 신념체계가 공유된 정의관이 규제하는 안정적인 정치 영역에 가치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롤스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원칙이 논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치적 원칙과 개인들이 깊이 추종하는 여타 사적인(종교적인) 헌신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롤스가 하버마스의 이론을 정치적이지만 않은 포괄적 이론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전혀 분명하지 않다.²¹⁾ (122) 무엇보다도 명백히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의 논증대화

15) TJ, p. 16.

16) JF, p. 186.

17) JF, p. 188, 189; PL, p. 142.

18) JF, p. 182.

19) JF, p. 182.

20) JF, 189-190.

21) 정치적-포괄적 구별의 일부 정식에 따르면 명백히 하버마스의 입장은 포괄적이지만 않다. 이를테면 『정

이론”은 응용 논증대화윤리(applied Discourse Ethics)를 개선하는 작업이 아니다.

122

도리어 하버마스의 정치 영역 접근은 롤스의 접근보다도 훨씬 더 정통 칸트주의에 가깝다.²²⁾ 하버마스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나 특정한 법적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정치 영역에 자신이 철학적 윤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보편화 원리 U를 적용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기실 하버마스는 타당한 규범은 그 규범에 구속되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추상적 요건이 엄격한 보편화 가능성 요건을 창출하는 경우는, 그 추상적 요건이 사회규범의 제도적 “매체”에 적용될 때뿐이라고 논한다. 이 추상적 요건이 관료주의적으로 제정되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실정법 매체에 적용될 경우에는 헌법상으로 확립된 일련의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원리”(principle of democracy)가 도출된다.²³⁾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는 (특히 조슈아 코헨이 널리 퍼뜨린²⁴⁾ 민주적 제도가 시민들이 “이상적 논증대화”(ideal discourse)의 조건을 좀 더 근사적으로 충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그러한 입장은 하버마스가 “전근대적” 세계관으로 취급한 법적 타당성과 도덕적 올바름의 직접적 융합을 함축하는 듯하다.²⁵⁾

따라서 하버마스의 입장은 한낱 도덕적 입장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특히 정치 영역에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하버마스가 “기본 구조”가 아니라 법을 주제로 삼기는 해도 말이다. (123) 그러나 분명히 하버마스는 자신이 제시한 규범적 원칙들의 지위를 두고 더욱 강한 주장 몇 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123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 원칙들의 자립적 지위와 양립 불가능한지의 여부, 혹은 민주주의의 논증대화이론이 의사소통행위이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속적인지의 여부이다.

치적 자유주의』 서두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식으로, 도덕관은 “인간 삶의 가치, 개인적 성격의 이상과 더불어 우정·가족 관계·집단 관계의 이상 등 그 외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제한하는 관념을 포함할 때”(PL, 13) 포괄적이다.

22) 이 주제로 칸트를 논의한 연구로 Arthur Ripstein(2009), *Force and Freed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13. 하버마스를 논평한 Christopher McMahon(2002), “Why There is No Issue between Habermas and Rawls”, *Journal of Philosophy*, XCIX, 3, pp. 111-129는 이 지점에서 심각한 오해를 저지르고 있다. 유용한 해명으로 Matthias Kettner(2002), “The Disappearance of Discourse Ethics in Habermas’s *Between Facts and Norms*”, eds. René von Schomberg and Kenneth Baynes, *Discourse and Democrac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일부 저자들은 칸트의 자유주의가 포괄적 신념체계라는 롤스의 단언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하라. Thomas Pogge(2002), “Is Kant’s *Rechtslehre* a ‘Comprehensive Liberalism’?”, ed. Mark Timmons, *Kant’s Metaphysics of Morals: Interpretive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3-158.

23) BFN, p. 110.

24) Joshua Cohen(1989),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eds. Alan Hamlin & Philip Pettit, *The Good Polity*, Oxford: Blackwell, pp. 17-34.

25) BFN, p. 106. 코헨은 『사실성과 타당성』 출간 전 모든 사람이 하버마스가 취하리라 예상한 입장을 체계화한 것이다. 『사실성과 타당성』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제시한 일부 입장은 사람들이 하버마스의 실제 입장이 간단하게 간과될 정도로 앞선 예상과 심각하게 불일치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논증대화윤리에 관한 칼-오토 아펠의 입장과 하버마스의 입장을 계속해서 혼동하며, 코헨의 입장을 하버마스의 입장과 섞어서 생각하는 경향도 여전히 매우 우세하다. 롤스의 일부 언급도 똑같은 경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특히 RH, p. 177을 보라.

2. 하버마스의 선험론주의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까지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하버마스가 논증대화원리 D에 “약한 선험론적”(weak transcendental) 지위를 주장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주장이 “강한” 선험론적 주장과 대비되는 “약한” 선험론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그리 많은 사람에게 인상을 남긴 것 같지는 않다.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이 주장이 선험론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롤스를 비롯한 대부분은 스스로 선험론적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결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선험론적”과 “형이상학적”을 반의어보다는 동의어로 간주하며, 따라서 어떤 철학적 입장이 선험론적 주장을 포함하기만 하면 포괄적 신념체계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게 된다.²⁶⁾ 이는 그리 명백하지 않다.

하버마스의 선험론적 주장 용어 사용 방식은 불가피한 전제조건(unavoidable presuppositions)을 체계화하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버마스 고유의 작업은 이른바 선험화용론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실천의 전제조건을 명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묘수는 어떤 전제조건이 특정한 실천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문제의 실천이 (우리 인간에게) 화용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이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합리성이 언어 의존적 능력이며, 언어적 의미는 가령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실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의 표현에 부여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러므로 특정한 합리성 원칙들은 우리에게 선험론적 지위가 있는데, 이 원칙들이 대화 해석의 필수 전제조건이고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언어에 의존하는 한 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선험론적 주장은 약한 주장이다. 그 까닭은 원칙적으로 다른 어떤 생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지 형식이나 언어 형식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결과 그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지 형식을 결국 이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명백하지 않다. (124) 이는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생물과 조우하는 날에 해결될 경험적 문제이다.

124

이 때문에, 즉 화용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간주된 것이 실은 불가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험론적 주장은 논박 가능한 주장이나 “약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인간의 합리성이 갖는 특정한 측면이 언어적 표현에 의미론적 내용을 부여하는 사회적 실천의 구조적 특징에 상응한다는 이유에서, 한낱 특수한 문화적 전통의 내용이 아니라 약한 선험론적 필연성을 띠는 점이다.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그 다음으로 주요한 요소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규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하버마스가 말하듯이 “사회적 재생산이 언어적으로 매개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세계관의 구조변동, 법과 도덕의 보편화, 사회적 주체의 점증하는 개인화”²⁸⁾를 초래하는 “특정한 구조적 제약에 종속된다.”²⁹⁾ 가령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의 한 가지 특징은 거

26) 이 맥락에서 리처드 로티는 주된 공격자이다. 예를 들어 Richard Rorty(200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2n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81-383, 또는 Richard Rorty(1998), “Pragmatism and Law: A Response to David Luban”, ed. Morris Dickstein, *The Revival of Pragmatism*, Raleigh, NC: Duke University Press, p. 307.

27) Wilfrid Sellars(1963), “Some Reflections on Language Game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New York: Routledge and Kegan Paul.

28) TCA 2, p. 87.

의 전적으로 대칭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이다.³⁰⁾ 말하자면 일단 제기된 주장을 누구든지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추론적 태도(*inferential moves*)를 취할 수 있다. 누구든지 화자가 주장을 제기할 자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등등. 이 대칭적 실천의 특징에 **직접적인** 도덕적 의미는 없으며 위계적 사회는 이 실천이 간직한 갈등의 잠재력(*disruptive potential*)을 쉽게 억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천은 문화적 재생산을 규범의 보편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기**(*bias*) 때문에 [도덕적] 의미를 얻는다. 특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의식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 협력을 확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시적 언어로 성취된 합의에 점점 의존할수록, 사회는 강제 없는 합의를 확보하는 능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협동 체계는 개인이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의 갈등에 더욱 취약해진다(이 경우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의 구조 덕에 그리할 자격을 향유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평등주의적 사회규범 혹은 “일반화 불가능한 이익”을 구현하는 규범은 문화적 진화의 역학에서 나타나는 선택 불이익(*selective disadvantage*)에 노출된다.³¹⁾³²⁾

따라서 하버마스가 보편화 원리 U의 선험론적 지위를 주장하는 의도는 U의 정당화에 있지 않다. 그 의도는 그와 같은 유형의 원리가 모든 인간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뿐이다. (125) 만약 보편화 원리가 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진다면(완전히 이질적인 기본 직관을 따르는 문명을 어쩌다 발견하기라도 하면 심지어 **잠정적으로** 그럴듯하지도 않음이 밝혀질 터이고), 그때는 불가피한 근본적 전제조건이라고 추정된 바가 실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는 매우 훌륭한 증거가 나온 셈이다.³³⁾

125

물론 롤스와의 논쟁에만 한정하면 하버마스가 이 점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논쟁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원리 U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더욱 추상적인 논증대화원리 D를 실정법 매체에 적용하면 민주주의 원리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논증대화원리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만 타당하다.”³⁴⁾

원리 D가 규범은 반드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platitudinous*) 이야기임을 근거를 들어 자립성을 획득한다고 손쉽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³⁵⁾ 결국에 이 점은 롤스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바이기에 롤스와 하버마스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

29) TCA 2, p. 87.

30) Brandom, *Making It Explicit*, p. 168. 한 가지 명백한 예외는 1인칭 권위(*first-person authority*)이다.

31) 다음과 비교하라. Shaun Nichols(2004), *Sentimental Ru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니콜스의 입장은 도덕적 감정이 그 효과를 증폭하는 내용 편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사한 구조를 취한다.

32) 역주: 마치 자연계에서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형질이 자연선택의 관점에서 도태되듯이, 문화 영역에서 비평등주의적 사회규범은 문화적 선택의 측면에서 도태된다는 뜻으로 “선택 불이익”을 논한 것 같다.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는 비평등주의적 사회규범이 합당한 이유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이다.

33) 이러한 일이 반드시 원시 사회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음에 유의하라. 오직 “신성한 것의 언어화”, 즉 신화에서 (일련의 주장으로 성문화 및 체계화된) 종교로 이행함과 동시에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이 문화적 진화를 매개하기 시작한다.

34) BFN, p. 107.[역주: *FG*, p. 161.]

35) Rainer Forst(1999), “The Basic Right to Justification: Towards a Constructivist Conception of Human Rights”, *Constellations*, VI, 1 pp. 35-60.

는다. 롤스가 공적 이성관을 제시하고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기초로서 **잠정 협정(modus vivendi)**을 거부하는 데서 이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버마스의 주장이 “약한 선험론적” 지위에 있다고 말한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버마스의 주장을 포괄적 신념체계에 포섭됨으로써 그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답은 ‘아니요’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고발 자체가 논점 회피이다. 그 까닭은 선험론적 주장이 참이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규범적 직관은 이미 모든 포괄적 신념체계의 구성요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는 규범적 테제들을 식별하는, 유용한 산파 기능을 수행하는 선험론적 방법과 함께 말이다. 유일하게 선험론적 주장이 종속적인 경우는 그 주장이 거짓일 때뿐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선험론적 주장을 치워놓아야 하는 이유는 종속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거짓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선험론적 주장의 내용에 입장을 취해야 한다. 단순히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의 일부로서 기각하면 논점을 회피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선험론적 주장이 롤스의 좀 더 일반적인 틀에 “들어맞는” 지점은 어디인가? 선험론적 주장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은 “다원주의의 사실”의 제약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상기해보면, 롤스가 정의관의 자립적 정식을 고집하는 동기는, 자유와 평등의 조건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행사할수록 궁극적 삶의 목적을 둘러싼 불일치가 작아지지 않고 커진다는 사실에서 나온다.³⁶⁾ 이는 예를 들어 사색하는 삶이 행동하는 삶보다 우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단히 현명한 주장이다. (126) 하지만 가치의 문제 측면에서 다원주의가 점차 확대되면서, 근대 사회에서 특정한 도덕적 원칙, 그중에서도 법적 원칙 측면에서는 얼마간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26

심지어 극도로 사적인 가치의 측면을 보아도 자유주의 사회에서 균일하게 다원주의가 커져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딱 한 가지 예로 가족 규모를 생각해보자. 근대화 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족 규모가 급속도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추동하는 원인은 개인의 성취, 지리적·사회적 이동성, 직업적 성공을 더욱 중시하는 일련의 가치가 보편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가족이 사회적·문화적 “후진성”, 말하자면 문화적·종교적 전통의 변동 과정에 거의 전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듯한 현상을 상징한다는 낙인이 널리 퍼진다. (이 규칙의 예외로 종교 공동체가 도시 생활과 방송 매체와 같은 근대 사회의 문물에서 구성원들을 차단하는 식의 매우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³⁷⁾ 참으로 이 수렴 과정은 설명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로 획일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다.

나는 가족 규모를 단지 사례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다원주의의 “사실”이 때때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가족 규모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원칙의 내용에 어떤 즉각적인 영향(bearing)을 주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가치의 변화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원칙의 물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령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잔혹함을 점점 혐오하고, 신사도와 무사도가 퇴조하며, 응보적 처벌과 권위주의적 양육이 줄어드는 “풍습의 연화”(softening of mores)가 “문명화 과정”의 일부로서,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사회가 겪었거나 현재 겪는 중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³⁸⁾ 따라서 가치의 문제를 두고 심원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가치 체계 혹은 보다 일반적

36) PL, pp. xxvi; JF, pp. 3-4.

37) Peter J. Richerson & Robert Boyd(2004), *Not by Genes Alo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69-187.

으로 포괄적 신념체계에서 시간이 지나며 관찰하는 변화 유형은 ‘랜덤 워크’(random walk)가 아니다. 하버마스는 (막스 베버가 말한 뜻에서³⁹⁾) 법과 도덕이 형식주의로 변화하는 것도 방향성 있는 과정으로, 사회통합의 매체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등 인간 종이 지닌 인간학적으로 뿌리 깊은 특징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규범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수렴을 예상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영역에서는 발산을 예상할 수 있다.

(127) 그래서 하버마스가 자신의 원칙에 관하여 제기한 약한 선험론적 지위 주장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최선의 방식은 이것이 합당한 다원주의의 범위에 경계를 확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127

이 측면에서 하버마스와 롤스의 핵심 차이는 하버마스가 그러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사실보다는 그 경계를 설정하려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롤스가 특수하게 비자유주의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의 유령에 직면하여 유일하게 의지하는 바는, (명백히 게리멘더링과 순환논리의 우려를 유발할 터인⁴⁰⁾) 그러한 신념체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합당성”을 정의하는 작업이다. 하버마스의 선험론적 분석이 내포한 의도는 자신이 선호하는 규범적 개념이 합당한 불일치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버마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불일치의 유령을 만들어내는 사고실험이 칸트적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입장이 갖는 핵심 이점은, 하버마스의 주장에 경험적, 인간학적 차원이 있어서 롤스의 입장이 제기한 바보다 훨씬 풍성한 토론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단지** 하버마스가 이 탐구의 경로에서 선험론적 논증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하버마스의 입장을 포괄적 신념체계로 분류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 분명해져야 한다.

3. 실천적 합리성

롤스가 하버마스의 입장이 자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주된 이유는, 그 입장이 이론적, 실천적, 미학적 합리성을 포괄적으로 해명하는 “의사소통행위이론”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신념체계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유와 행위의 형식 및 구조적 전제조건에 관한 그와 같은 어떠한 포괄적 해명의 일부도 원하지 않는다.”⁴¹⁾ 물론 그러한 해명의 일부도 원하지 않다는 말은 그러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지 않다. 롤스가 자신의 정의관과 행위이론의 결별에 얼마만큼 성공했는가를 두고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롤스가 합리성과 합당성의 구별(더불어 이와 매우 친화적인 “두 가지 도덕적 능력” 개념)을 도입한 후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말이다. 게다가 거칠게 보아 합리성-합당성 구별과 연관되는 하버마스의 도구적 행위-의사소통적 행위 구별이 하나의 개념 틀로서 롤스 자신의 틀보다 그토록 종속적인지도 의문이다. 기실 두 이론가의 차이는 단순히 롤스가 논증 없이 그 구별을 마음대로 써먹는 반면, 하버마스는 1,000쪽짜리 책

38) Nobert Elias(2000), *The Civilizing Process*, London: Blackwell. 또한 Joseph Heath(2004), “Liberalization,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XXX, pp. 665-690.

39) Max Weber(1968), *Economy and Society*, ed. Günther Roth & Clan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p. 811.

40) Stephen Lecce(2008), *Against Perfectionism*,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216-218.

41) RH, p. 179.

을 써서 그 구별의 자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128) 하버마스가 그리 생각한 이유는 도구적 합리성관을 칸트의 실천 이성관을 겨냥한, 극도로 심각하고 본질적으로 회의주의적인 도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28

반면에 롤스는 회의주의의 문제를 무시하고, 합당성을 명시적 방어나 심지어 정의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도덕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길을 택한다.⁴²⁾

혹자는 롤스가 “합당성과 합리성”을 일련의 자립적 개념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사실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두 개념을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 개념의 요소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법하다. 롤스는 다른 곳에서 [합당성 및 합리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논하면서, 두 능력이 자립적이며 따라서 광범위한 입장들과 양립 가능하기에 특수한 도덕심리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롤스는 하버마스에게 응답할 때는 다른 설명 방침을 택하여 이들 개념이 자립적이라기보다는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이해 가능한 입장도 내가 사용하는 의미의 합당성과 합리성 없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증이 이성을 바라보는 플라톤과 칸트의 입장도 포함한다면, 논리학과 수학의 가장 단순한 일부도 포함한다.”⁴³⁾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기 어렵다. 엄격한 도구적 실천 이성관의 결점이야 많겠지만, 그 적당한 모델이 모든 알려진 “논리학과 수학”의 원칙에 부합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히 많은 이론가들은 정확하게 수학적 우아함과 단순성을 이유로 기대 효용 극대화 모델에 매력을 느낀다. 그럼에도 롤스 자신은 그러한 모델이 명시적으로 합당성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합리성에서 합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⁴⁴⁾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공리주의도 “합당성”을 거부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합당성”을 (가령 타인에게 정당화 가능한 방식으로 행위하려는 욕구를 필히 포함하는 등) 사람들의 욕구 내용에 관한 실질적 논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해하려 한다면, 합당성은 반드시 “타인의 권리 주장”⁴⁵⁾에 관해 갖는 몇몇 믿음 때문에 선호에 반하여(counterpreferentially) 행위하는 행위자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합당성은 믿음-욕구 행위 모델을 거부함을 함의한다.⁴⁶⁾ 롤스가 언급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합당성은 휴적 동기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⁴⁷⁾ 그렇기에 어떻게 롤스가 합당성 및 합리성과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 개념에 제시하는 해명이 어떠한 논쟁적인 실천 이성관의 측면에서도 자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129

마지막으로 흔히 간과되는 것으로,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포괄적 신념체계와 관련된 지식은 차단되어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유관한 과학적 정보(“사회이론이 제시하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사실들”⁴⁸⁾)에는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숙고하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한 단순한 사실과 통계 정보

42) JF, p. 82.

43) RH, p. 138.

44) PL, pp. 53-54.

45) PL, p. 52.

46) Thomas Nagel(1970), *The Possibility of Altru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보라.

47) PL, pp. 83-84.

48) JF, p. 87.

이상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은 가상적인 장래의 국가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몇몇 역학 모델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런저런 유형의 제도적 장치가 가져올 법한 결과가 어떠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단지 제헌 위원회 단계와 입법의 단계에서만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 “제1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문제의 모델은, **그중에서도(inter alia)** 개인들이 일상적 속고에서 합리성과 합당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추정하는 데 필요할 터인 행위이론을 반드시 포함하기 마련이다.⁴⁹⁾ 롤스는 이 문제에 답하고자 인문과학으로 시선을 돌리는 대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합당성이 합리성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가정을 채택한다.⁵⁰⁾ 그러나 이 가정을 **행위 모델**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원초적 입장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결정할 때 제안된 재분배 도식의 인센티브 효과를 무시해야 한다는 (G. A. 코헨이 이끌어낸) 도움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결론은 결국 차등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무너뜨린다.⁵¹⁾

그러므로 롤스에게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보다 훨씬 탄탄한 행위이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롤스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 추정되는 그런 “사회이론”에 살을 붙이려면 훨씬 세밀한 이론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물론 하버마스의 두 권짜리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들여다보고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론이 **그토록 엄청나게** 세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이 정치적 정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의 도구적 행위-의사소통적 행위 구별은 롤스의 합리성-합당성 구별에 꽤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며(양자 모두 칸트의 가언명령-정언명령 구별을 개념적으로 계승한다⁵²⁾), 따라서 **내재적으로** 더 논쟁적이지는 않다. (130) 하지만 분명히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 도입 방법은 언어철학에서 고도로 논쟁적인 몇몇 작업에 기초하는 것도 사실이다.

130

정치철학의 핵심 물음이 화행의 발화수반적 요소와 발화수단적 요소 사이의 구별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에 불모로 잡혀 있다는 발상은 최대한 관대하게 말해도 문젯거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이론이 하버마스의 정치철학 작업과 얼마만큼 유관한가, 그리고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리”가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어느 정도로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내 답은 “그다지”인데, 간단하게 원리 D가 그렇게 논쟁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논증에 필요한 바는 특정한 행위 유형의 합리성이 (그저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표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따르는 규칙을 타인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관에 깔린 의도는 비도구적 형식의 실천적 합리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화행의 합리성 분석을 통해 이를 해명하기로 선택했지만, 그 외에도 동일한 기본적 구별을 이끌어내는 덜 논쟁적인 방식도 있다. 도구적 합리성을 주제로 한 문헌, 특히 게임 이론 문헌을 읽어보면 도구적 패러다임 내에서도 순수한 수단-목적 추론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확립된 성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

49) 롤스는 “일반적 평형에 관한 정교한 경제 이론 같은 것”처럼 과도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가 논쟁에 휘말리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JF, 90).

50) JF, p. 82.

51) G. A. Cohen(1997), “Where the Action is: On the Site of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XXVI, 1, pp. 3-30, 8.

52) PL, pp. 48-49.

다.⁵³⁾ 예컨대 표준적인 (비협동적) 게임 이론은 의사소통과 약속 모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는 전략적 상호작용의 비결정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결정 모델과 게임 이론 모델 모두 잠정적 세계 상태를 행위자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용되는 목표로 받아들인다. 행위자는 타인의 지향적(intentional) 상태를 변경하는 목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세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의 부산물로 변경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고서는 말이다.⁵⁴⁾ 두 가지 제약 덕분에 도구적 모델이 재구성할 수 없는 사회적 행위의 방대한 견본이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 점은 하버마스가 택한 방식보다 유의미하게 덜 논쟁적인 방식으로 도구적 행위-의사소통적 행위 구별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실정법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가 모든 정치철학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유럽의 맥락에서는, 종종 하버마스를 이성과 대화의 힘을 믿는 한물간 계몽주의에 매달리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묘사하곤 한다. (131) 그 결과 하버마스를 주제로 한 상당수의 저술과 심지어 하버마스 자신의 저술에 드러난 일부 논조(tone)마저도 영어권 독자들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있다.

131

그 까닭은 “정의는 사회제도 제일의 덕목”이라는 주장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북미 정치철학의 표준에서 보면, 하버마스는 정치에 관해서 완강한 냉소적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버마스의 배경 입장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권력이라는 조절 매체로 조직되는, 사이버네틱적 자기조절 체계이자 생활세계가 “포위”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we the people)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결국에 해설자들은 이따금 하버마스의 입장이 롤스의 입장보다 얼마나 더 현실주의적인지를 놓치고 만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하버마스가 오직 일련의 선협론적 주장이나 논증대화 구조에서만 권리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권리”(right)는 정확히 법적 개념으로, 오로지 특정한 유형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와 유관하다. 이러한 사회는 곧 실정법을 매체로 통합되는 사회, 혹은 좀 더 종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 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권의 “보편성”을 논할 때, 하버마스는 권리 주장이 전근대 사회에서도 적절하리라는 점을 부인한다.⁵⁵⁾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원리가 실정법의 “법형식과 논증대화원리의 상호 침투에서도 출된다”고 논증한다.⁵⁶⁾ 하버마스가 염두에 두는 실정법은 두 가지 핵심 특징이 있다. 첫째, 실정법은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둘째, 실정법은 말하자면 올바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은 채 오직 절차적 제약만을 따르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정치 과정의 결과로서 “제정”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실정법이 정당할 수 있는가, 즉 도구적 이유 외에 실정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특히 “정치적 입법자가 언제든지 문제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규칙의 정당성을 근거지을 수 있는가”⁵⁷⁾를 설명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그 답은 소극적 자유

53) 이 점에 관해서는 Joseph Heath(1996), “Is Language a Gam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XXVI, 1, pp. 1-28.

54) Heath, “Is Language a Game?”, p. 26.

55) Habermas(1998), “Remarks on Legitimation through Human Right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XXIV, pp. 157-171, 165-167.

56) BFN, p. 121.

와 적극적 자유 혹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권리라는 형식을 띠는 권리의 체계를 통해서 제시된다. 소극적 자유 혹은 사적 자율성의 권리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실정법의 첫째 특징에 부응한다. 적극적 자유 혹은 공적 자율성의 권리는 절차적으로 제정되는 실정법의 둘째 특징에 부응한다.

하버마스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들 권리에 시대를 초월하거나 영원한 특징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들 권리는 관료제적으로 구조화된 정치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정당성의 결함에 대한 특수한 응답인 셈이다. (132) 더 나아가 하버마스는 “실정법”을 사회통합의 매체로 채택하는 어떤 도덕적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버마스의 입장은 통째로 인용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사회의 학습과정의 결과로서 근대에서 발견하는 실정법은 형식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 덕분에 실정법은 행위기대를 안정화시키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실정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해 조직하고 그리하여 법공동체로 형성하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는 것을 철학이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철학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셈이 된다. 철학자는 다음의 통찰,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에서 법은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낳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하게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는 통찰에 만족해야만 한다.⁵⁷⁾

위 설명을 고려할 때, “실정법”이 어떠한 특수한 포괄적 신념체계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롤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자립적 개념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리는 두 가지 구별되는 개념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구성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원리 D로, 약한 선협론적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즉 원리 D는 단지 “의사소통적으로 구조화된 삶의 형식 일반에 내장된 대칭적 인정 형식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화용론적으로 불가피하다.⁵⁹⁾ 다른 하나는 실정법으로, 근대 사회의 우연적 특징이며 자립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개념 모두 “정치적” 정의관에 포섭되기에 적합한 것 같다. 원리 D의 경우 모든 합당한 포괄적 신념체계가 이미 전제하기 때문이며, 실정법의 경우 사회학적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규범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입장을 떠받치는 쌍둥이 토대와 롤스가 정치적 정의관 개발에 필요한 자립적 토대로 제안한 “근본 개념들”(fundamental ideas)을 대조해보면 유익하겠다. 그러한 근본 개념에는 공정한 사회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기본구조의 개념, 원초적 입장의 개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개념, 마지막으로 공적 정당화의 개념이 있다.⁶⁰⁾ 상당히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133) 롤스의 근본 개념이 어느 정도로 “얽고” 논쟁적이지 않든 여전히 옳은 점은, 그러한 근본 개념들이 한편으로는 (필립 페티가 “정치 존재론”이라 일컬은⁶¹⁾) 사회의 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비전을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 개념처럼) 꽤 강건한 일련의 규범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7) TIO, p. 255.

58) BFN, p. 460.[역주: FG, p. 604.]

59) BFN, p. 109.

60) JF, p. 5, 25, 27.

61) Philip Pettit(2005), “Rawls’s Political Ontology”,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IV, pp. 157-174.

133

반면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리 관념은 좀 더 늘씬한 토대 위에 구성되며, 비교적 좁은 문제에 응답할 요량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하버마스가 보기에 권리의 체계가 응답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딜레마로 정식화할 수 있다. 그 딜레마는 자연법에서 실정법으로 이행하면서 어떤 “기능적” 이점을 얻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행 덕분에 국가 행위자가 더욱 복잡한 형태의 협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조작할 자유를 획득한다.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한 조절 작용을 허용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동시에 실정법으로 이행하는 현상은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인센티브를 “밀어낼”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병리학적 부작용 없이 기능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답은 이렇다. 개인이 법적 규칙에 도구적 정향을 채택할 선택권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고전적인 소극적 자유를 제도화하되, 이를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국가권력의 행사로 하여금 생활세계에서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에 맞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위 주장을 지지하고자 제시한 논증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나 권리의 체계를 그토록 늘씬한, 어떤 면에서는 규범적으로 빈곤한 전제조건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하버마스의 제안이 정치적 정의관으로 검토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만큼은 불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위험 요소는 하버마스의 입장이 몇몇 사적인 포괄적 신념체계에 종속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복미 정치철학의 표준에 비추어) 정확히 하버마스의 입장이 그 자신의 극도로 비관적인 국가관 때문에 “그릇된 방식으로 정치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5. 결론

정의관이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롤스의 강경한 주장은 철학자들이 철학적 기획의 한계를 반성하도록 강요하는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다. 사실은 철학자들이 근본적인 규범적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이러한 불일치가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롤스의 핵심 통찰은 **그러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안정적인 사회 협동 체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원칙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진 독특한 철학적 기획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수준에서 모이는 그런 논거들은 한 사람의 근본적 신념을 표현하는 논거들과 달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 사람의 논쟁적인 철학적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과거에 경쟁 입장의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바로 그) 논거를 그저 되풀이하는 것은 롤스가 제안하는 특수한 철학적 기획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34) 같은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단일한 참인 종교 혹은 논란이 되는 신성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 갈등이 빚는 문제의 제안된 해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34

그리하여 롤스가 경쟁하는 철학적 입장, 특히 하버마스가 만들어낸 종류의 “큰 이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tune out) 경향을 발전시킨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장의 중심 물음은 과연 우리가 롤스의 핵심 발상을 인상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따라서 정치적 정의관을 체계화하는 독창적인 기획에 참여할 의지가 생기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하버마스의 논증대화론적 접근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나는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치적 정의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물론 하버마스는 롤스를 논평하면서 둘 사이에 의견이 다른 지점이 매우 적다고 시사했다. 반면 롤스는 둘 사이의 불일

<번역, 2020.7.4.>

치가 훨씬 심대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롤스는 자신의 기획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철학적 기획에 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점에서 나는 하버마스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불일치는 핵심 요지의 문제보다는 세부 사항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